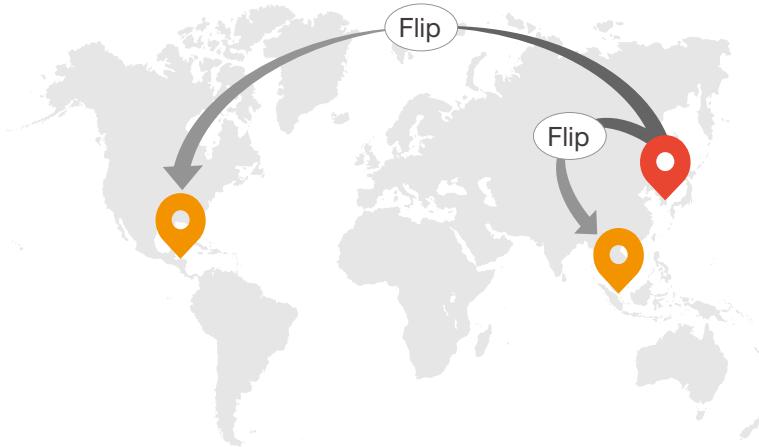


Start-up Flip

+ Start-up Flip 이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외 진출을 위해 해당 국가로 본사를 옮기고 기존의 한국 법인을 자회사로 만드는 개념으로, 신설 법인이 기존 법인을 자회사 등의 형태로 지배하도록 지배구조를 뒤엎는(Flip) 컨셉입니다.

Overview



- 세무 이슈, 주주 동의, 외환관리법상 신고 의무 등
내·외부적 절차 준수가 필요하여, 해당 비용을 상회하는
플립의 당위성 검토가 필수적
- 해외진출 스타트업의 70%가 성장 초기단계(Seed, Pre A, Series A)이며, 진출 지역은 북미(37%),
중국(20%), 동남아(15%) 순*
- 스타트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은 단독 투자가 77%로
가장 많고, 합작투자(8%), 플립(5%) 순으로 집계*

*출처: KOTRA, 2022

Flip 시 장점 +

- 해외 현지 고객 확보 및 고객과의 원활한 거래 가능:
거리적 접근성 및 법률적 리스크 완화
- 투자의 용이성 (해외 VC의 투자 유치 등): 회계처리,
시차, 법률이 다른 해외 업무로 인한 업무 지연 등
투자를 위한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음
- 국내의 법률적 제한에서 벗어남: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에 따른 본사 설립 고려 가능 (ex. 한국에서
불법인 비즈니스가 미국에서는 합법일 수 있음)
- 기업가치 극대화: 미국 투자자의 기업 가치 평가 시,
자국 내 기업에 대한 우호적 태도

Flip 시 고려사항 +

- 주주 동의 문제
 - 기존 투자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 특히 기관 투자자 설득 과정의 복잡성 존재
- 세금 문제
 - 매출 규모, 이익, 자산 상황 등에 따른 세금액 변동
 - Flip 과정에서 구주매출시 양도 소득세 발생
 - 주주 및 대표이사의 세무상 거주자 이슈
- ‘플립’ 개념에 대한 생소함: 국내 법률 대리인, 회계사
역시 ‘플립’ 경험이 드물며, 관련 전문 지식 부족
-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장벽: 플립 국가에 대한 이해
및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대응에 대한 어려움 존재

Flip 성공사례

기업명	국가	서비스	주요 내용
센드버드	미국	기업용 채팅 메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2013년 국내 법인 설립, 2014년 미국 플립해외 투자자 자본 유치 목적이용자 수 1억명 이상,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윗 테크놀로지스	미국	업무 협업 툴	<ul style="list-style-type: none">2017년 국내 법인 설립, 2021년 미국 플립업무 메신저&업무관리 기능 결합주요 고객: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위워크 등
뤼이드	미국	AI 기반 교육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2013년 국내 법인 설립, 2014년 미국 플립해외 투자자 자본 유치 목적이용자 수 1억 명 이상,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삼일PwC의 제공 서비스

Assurance

IPO 자문 및 회계 감사

투자구조 개편 회계 자문,
IPO 자문 및 회계 감사

- 투자구조 개편 관련 회계처리 검토
- IPO 목적의 FLIP 시 최적의 투자구조 개편방안 자문
- 투자구조 개편 후 IPO 자문 (IPO Readiness, GAAP conversion, 재무제표 작성, SOX 구축 지원 등)
- IPO 목적의 외부감사 수행

Tax

법인 전환 및 구조화

투자구조 개편 방안의 세무효과 검토 및 실행 지원

- 투자구조 개편 방안, 사업 분리 시의 분할 방안 검토 및 세무상 유·불리 분석
- 현 구조 및 변경 후 구조의 세무 효과 검토 및 비교
- 미국 법인 설립 형태 및 세무상 고려사항 검토
- 운영 단계 및 Exit 시의 세무 효과 검토 및 비교
- 상증세법 주식평가 및 보고서 발행
- 법률 계약서의 세무상 고려사항 작성 지원 및 검토

Deals

투자유치

Corporate Financing

미국 모회사 앞 투자유치

- 회사소개자료 등의 작성부터 최적의 투자자 선정까지 연속적인 업무 수행 예정
- 투자 실사 시 재무/세무 및 법률 검토 지원
- 투자계약서 검토 지원 (투자자 양식)
- 미국 내 네트워킹 구축 지원 등 (추후 협의)
 - PwC San Francisco VC팀 introducing

Legal

법률지원

타겟의 특성 및 고객 니즈에 따른 최적의 Legal One-stop Service 제공

- 플립 구조 및 방안 검토 (현물 출자 방식 등)
- 관련 주주 동의서 또는 주주간 계약서 작성
- 주식투자계약서 및/또는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 이사회 의사록 작성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환신고
- 미국 법인의 국내 원화취득 신고 등 대행
- 미국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한 현물출자 등 납입 및 주식 발행 절차 진행

Flip 진행 단계별

업무 구분

플립 단계

플립 준비 Pre-flip Preparation

단계 별 업무 세부사항

- 기업가치평가보고서: 상증법상 순자산 가치 평가법 및 DCF 평가
- Stock Exchange Agreement: 1:1 비율 기준
- 주주 동의, 이사회 동의 및 서류 준비
- 미국 법인 설립: 기존 자회사 활용
- 외환 거래 신고 준비 및 은행과의 Communication 필요

플립 실행 Flip Execution

- 법인 구조 전환: 필요 서류 제출 등
- 외환 은행 및 한국은행 신고용 서류 제출

플립 후 처리 Post-flip Follow-up

- 주주들에게 안내 및 Stock Certificate 발송
- EIN (Employer-Identification-Number) / TAX ID 발급
- 한국 법무 법인에 외환 은행 신고 마무리용 서류 전달
- 미국 주소 확보 및 은행 계좌 등록
- 미국 법인-한국 법인 계약 등록 (투자, 대여·차입, Service agreement 등)
- 한국 세금 신고 (양도세 등) 및 Working VISA(임직원) 등록

Frequently Asked Questions

Q: 플립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A: VC 투자를 받기 전이 좋습니다. 기관 투자를 받지 않아 투자자 설득이 용이한 때와 자본금을 전부 소진하여 세무상 가치가 0에 수렴할 때가 골든 타임입니다.

Q: 플립의 성공조건은 무엇인가요?

A: 사전에 사업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해외 VC와의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플립을 한다고 VC들의 무조건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Q: 플립을 하게 되면 국내 정부 지원은 못 받나요?

A: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창업 정책인 '스타트업 코리아'에 따라 국내 기업이 플립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참고: 사업 거점 비교

대분류	항목	미국 California	미국 Delaware	싱가포르	
법인 설립	외국인 지분 소유	가능	외국인·해외법인 100% 소유 可	가능	외국인·해외법인 100% 소유 可
	최소 납입 자본금	1\$ USD	*비즈니스 유형이나 산업에 따라 라이선스 비용이나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1\$ USD	*비즈니스 유형이나 산업에 따라 라이선스 비용이나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사진 및 주주 구성	주주비례	주주 수에 비례하여 이사진 구성	최소 1인	필요 주주 1 > 임원수 1명 (겸임可)
	법인 설립 비용	약 1500\$	은행 계좌 및 자본금 별도	약 1500\$	은행 계좌 및 자본금 별도
세금 부담	법인세	연방세	연방세 21% 고정	연방세	법인세 17%
	주법인	8.84%	주법인 0%	델라웨어에서 미영업 시 영업 시 8.7%	감면 일반 과세소득 S\$ 20만까지 구간별 감면
	배당원천세	세금 부과	연방 10/15%	연방 10/15%	세금 부과 없음
	판매세	판매세	8.68%	판매세 0%	GST 9%
	그 외 기타 세금 의무	Franchise Tax	영업 이익 없을 시 기본적으로 \$800	Franchise Tax 승인된 주식수와 자금 기반으로 산정	양도차익 과세 2024년부터 거주자요건 미충족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가능

Contact us

스티븐정(정승민) Partner
PwC Asia Pacific CF Leader

02-3781-2551
steven.jeong@pwc.com

남승수 Partner
Assurance

02-3781-1448
seung-su.nam@pwc.com

김홍현 Partner
Tax

02-709-3320
hong-hyeon.kim@pwc.com

김병국 Partner
Deals

02-709-8538
byungguk.kim@pwc.com

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408W-BR-029

© 2024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